

— 김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 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—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1. 17일 김 제 시 장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11. 25
- 다. 상 정 일 자 : 제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('97. 12. 22)
총무위원회에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:총무과장 백길수)

- 가. 제 안 이 유
 -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특수업무수당 규정에 의한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의 급지 구분을 명확히하고 분뇨, 하수, 폐수, 쓰레기처리 시설 및 시체화장, 묘지·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정하려는 것임
- 나. 주 요 골 자
 - ~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~를 ~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~로 제명을 변경
 -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의 지역등급 ~을지~를 삭제하고, 비고 다음에 전라북도 급지의 구분을 명시함

-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장려수당 지급안 명시
 - . 직접처리 부서 근무자 : 180,000원
 - . 현장관리 부서 근무자 : 90,000원

-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장려수당 지급안 명시
 - . 직접처리 부서 근무자 : 150,000원
 - . 현장관리 부서 근무자 : 75,000원

- 하수.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장려수당 지급안 명시
 - . 직접처리 부서 근무자 : 120,000원
 - . 현장관리 부서 근무자 : 60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

-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등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

4. 질의 및 답변

- 질의(의원 황형묵)
그간 조례없이 지급한 것은 불법이므로 변상해야 하지 않는가?

○ 답변(총무과장 백길수)

시군통합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며, 금년 3월에 누락된 사실을 알고 지급을 중단했고,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 불법은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서 주어야 하므로 잘못된 사항임

- 한 번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은 곤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질의(의원 최병대)

조례를 통합하고 명칭을 바꾸는데 준칙안이 시달 되었는가?

○ 답변(총무과장 백길수)

준칙이 시달된 것은 없고 특수업무 수당에 의료업무등 수당과 장려수당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명은 특수업무수당 조례로 개정하게 되어있으며, 별다른 문제는 없음

5. 심 사 결 과

○ 총 11명위원중 8명위원이 참석,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